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4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김상훈
최보윤 · 서천호 · 김석기
엄태영 · 김재섭 · 정동만
김은혜 · 송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해외봉사단원의 보호)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실시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9조의2(해외봉사단원의 보호)</u> <u>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실시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